

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(전현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50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21.

발 의 자 : 전현희 · 김문수 · 김남희
김병주 · 안태준 · 민병덕
이언주 · 조계원 · 홍기원
임문영 · 김현정 · 김영배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와 주택의 소유권을 분리함으로써 분양가격을 낮추고 지가 상승에 따른 투기를 방지하는 등 공공성이 높은 주택공급 방식임.

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대지조성 및 주택건설에 대규모 자금이 소요됨에 따라 사업비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경우 분양가격 인하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설 및 대지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의 지원대상으로 명기함으로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9조제1항제1호사목 신설).

법률 제 호

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제1호사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아목부터 카목까지로 하고,
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사. 「주택법」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설
및 대지조성사업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기금의 용도) ① 기금의 주 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	제9조(기금의 용도) ① ----- ----- -----.
1. 다음 각 목에 대한 출자 또 는 용자 가. ~ 바. (생 략) <신 설>	1. ----- ----- 가. ~ 바. (현행과 같음) 사. 「주택법」 제2조제9호에 <u>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</u> <u>의 건설 및 대지조성사업</u> 아. ~ 카. (현행 사목부터 차목까지와 같음)
사. ~ 차. (생 략)	
2. ~ 9. (생 략)	2. ~ 9. (현행과 같음)
② ~ ⑥ (생 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